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6년 5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5월 17일

3. 제안이유

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이 조성하는 일단의 공업 단지에도 준용하기 위한것 임.

4. 주요골자

- 공업단지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 규정
- 사업의 시행
 -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 또는 위탁 시행
 - 토지매입, 사업비의 결정, 공업용지의 조성 및 사용
-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
 - 설치, 구성, 기능, 회의소집, 사무처리

- 용지분양
 - 입주자격, 분양가 결정, 분양절차이행
- 공동시설의 관리
 - 입주자 부담으로 관리, 유지보수비 수납시 별도관리
- 타법령과의 관계
 -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타관계법 적용
 - . 도시계획법, 건축법, 조례감면 규제법, 지방재정법, 토지수용법등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공업발전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증평출장소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관련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내용으로서,

사업의 시행,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운영, 용지분양, 공동시설의 관리 등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문화하여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,

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부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